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인권단체
문 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상임활동가 010-4713-9816
제 목	9월 13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개최
발 송 일	2023년 9월 13일(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2023년 9월13일 (수) 오전 10시 국회 농성장

주최 |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별금지원제정연대, 플랫폼C,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농성장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인권단체
(김용균재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발언 : 선언자1 - 박상은 (플랫폼C)
선언자2 -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선언자3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선언자4 - 나현우 (청년유니온)
현장 발언 -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 선언문 낭독
- 함께 하는 행동 : “진짜 사장 나와라!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챌린지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작년 여름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손배폭탄으로 제약할 수 있는 현행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다시 대두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노동자들의 농성과 단식, 오체투지 등 투쟁을 통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조 정의 조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시하며, 노동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도 쉽사리 '불법' 딱지를 붙일 수 있었던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 3조 손해배상 제한 조항에서 손배 청구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가족의 월급 등 가압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입니다.

3. 2003년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끊은 배달호 열사 이후 2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노조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노동권의 보장과는 거리가 먼 노조법 개정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를 정치가 외면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끝에 내몰려 목숨을 잃었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들이 법제도 바깥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정치적 야합 속에 8월 임시국회가 그냥 종료됐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9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안전 상정과 통과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9월 6일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다시 국회 앞에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법 개정 운동을 함께 해온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제안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1002명에 이르는 선언자가 모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국회에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를 함께 다짐하고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002명이 함께 한 선언문과 함께 기자회견 진행 사진과 발언문을 배포합니다.

- [첨부자료] 1. 기자회견 진행사진과 발언문
2. 선언문과 1002인 명단

▣ 기자회견 진행사진과 발언문



선언자1 - 박상은 (플랫폼C)

안녕하세요,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000인 선언에 동참한 플랫폼C 활동가 박상은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홍대입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다. 우리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3권은 전세계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특히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고 경총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모두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노동자 개인은 결코 대응한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집단으로 모이고, 집단으로 행동하고, 집단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법은 실제로는 이 노동3권을 너무나도 많이 침해해왔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하청은 원청으로 가라하고, 원청은 하청으로 가라 합니다. 하청노동자가 노조를 만들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팽팽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하면, 민영화에 맞선 파업을 하면 그것은 합법이 아니라며 몇십억, 몇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 뒤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도 지금 노조법으로는 불법이라는 말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해고에 반

대하는 파업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거나 예비노동자인데, 왜 이렇게 노동조합에 대한 감이 없을까요? 바로 노조법이 노조를 하기 어렵게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법뿐만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협박하는 경총 때문에 노조 하기가 어렵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정부 때문에 노조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조를 하기 어려워서 노조를 못하고, 노조를 해 본 적이 없으니 노조법 2,3조 개정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올 6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안에 73.5%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결국 논의도, 표결도 되지 못한 것에 저희는 분노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서민 걱정, 노동자 걱정 하는 척 하지 마시고,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정부에 요구합니다. 법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거부권 운운하며 협박하는 건 어디서 온 정치고 어디서 온 법입니까. 기업 편 그만두고 민의를 반영하십시오! 우리는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자2 - 지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시작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갑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사람들이 삶을 꾸리는 그 노동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짓고, 빵을 만들고, 물건을 나르고, 집을 짓고, 배를 만들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는 모든 노동을 통해 이 사회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노동은 하찮은 취급을 받고 어떤 노동자는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까. 삶을 위한 노동의 현장이 죽음의 장소가 되어갈 때조차 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까.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노동에 등급을 매기고 노동자를 숫자로 취급할 때 자본이 삭제한 사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의 존엄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제 1의 가치입니다.

일터라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안전하고 존엄하게, 사람답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거대 기업에 맞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존엄한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힘을 모으고 교섭을 통해 환경을 바꾸고 파업을 불사하여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 모두 노동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행성인은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오랜동안 알려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노동자를 포용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동자를 포용하는 것이 노조의 역할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은 성소수자들의 지지자로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많은 성소수자들이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나마 자신의 문제를 꺼내 놓아볼 수는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문제를 꺼내 놓거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창구가 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하던 안하던 노동조합이 있으면 내 문제를 말할 곳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노조에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파업에 손해배상을 470억을 청구하면 단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행동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행위에 적극 동조해온 정부는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일해서 먹고사는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맞습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장에 가짜 책임자가 나오는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에 법에 허점이 있으면 앞장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눈치싸움이나 하며 차일피일 할 일을 미루는 국회도 진짜 반성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본의 눈치를 보며 할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노동은 더욱 하찮아지고 노동자들은 더욱 고통받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존엄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시작합니다.

선언자3 -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4.28 올해 세계산재사망의 날 구호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자'이다.

산재사망, 예방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었다. 매해 발표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했던 이유는 산재사망 정보가 비공개되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업을 밝히고 그 망신을 바탕으로 산재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전가하고,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자신의 관리범위 밖이라고 뻔뻔스레 이야기했던 원청 회사에게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숫자를 세기기 위한 일이었다. 지금이야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원청 기업의 숫자에 병합이 되지만 10여년 전만해도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원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세어지지 않았다.

한국전력과 같은 산재사망 다발 기업에 무재해 몇천일 이런 표지가 공공연하게 붙어있던 일이 바로 엇그제 이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드는가를 따져야했고, 가장 큰 이윤을 얻는 이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세워왔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한 우리의 희망과 물리적 근거는 바로 노동조합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이다. 조직만이 아닐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기능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바꿔낼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드는 것 역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기본일 것이다.

노동자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원청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며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듯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노동조합의 조직과 제대로 된 기능이 필수적이며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리며 제대로된 노조법 2,3조를 만들어야한다.

그 길에 노동건강연대도 함께 하겠다. 투쟁.

선언자4 - 나현우 (청년유니온)

지난 2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불필요하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규모, 공공부문은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미조직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 없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고용노동부의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왜 대규모, 공공부문 사업장들의 파업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것은 현행 노조법이 오로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이나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점점 비대해져가는 플랫폼 경제 속에서 우리는 대기업과 플랫폼의 이익을 위하여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받길 원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중심 노동조합 조직률이 개탄스럽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개별로 쪼개져 일하는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될 일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놓여있는 청년노동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하는 세상은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이 판을 치는 지옥이 아닙니다.

끝없는 경쟁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일자리를 거부하기 위해, 더 높은 임금과 더 적은 모멸을 받기 위한 싸움만 남은 기업별 노조체제를 거부하기 위해, 그리하여 권리로서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청년구직자들이 당당히 교섭과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가 아니라 교섭테이블에 앉기를 원합니다.

당장 그럴듯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싸울테니, 우리의 손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있음을 입법을 통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통해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나가겠습니다.

현장 발언 -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천인 선언을 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하는 장소만 보더라도 옆에 천막 농성장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 조합원들이 무려 길바닥에서 8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됐다면 이 노동자들은 무려 8년째 길바닥에서 투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이 되지 않으면서 이 노동자들은 아무 잘못 없이 그냥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8년째 길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노동자들만 보더라도 노조법 23조가 왜 개정돼야 되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복직을 요구하며 8년째 투쟁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수많은 차별과 착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현대자동차에 4대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악랄하게 지금 10년 가까이 조합원들을 숙아내서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 잘라내는 방법도 매우 원초적입니다.

자동차 판매점을 강제로 폐업시키고, 판매점 이름만 바꿔서 동일한 장소나 인근 장소에 다시 냅니다.

그런 다음 조합원만 쉬어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길거리로 잘라냅니다.

대리점을 폐업시키고 다시 개소할 수 있는 권한은 원청인 현대기아차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조합원만 쫓아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그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것을 법원과 검찰에 고소했지만 법원이나 검찰 역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그리고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란 것은 원청 사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압도적으로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임금 조건을 결정하고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현대자동차 정의선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며 뒤로 숨어서 하청업체 바지사장을 조정을 해서 조합원들을 숙아내고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 정말 노예처럼 살아왔습니다.

정규직 영업사원과 똑같이 차량을 판매했지만 4대보험조차 내지 않는 정말 지옥 같은 노동 환경에서 무려 20년 넘게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이렇게 길거리로 쫓겨나서 무려 10년 가까이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임금 조건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대자동차 정의선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정의서는 뒤로 빠져서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더 지속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노조법 2,3조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넘쳐납니다. 1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내 가족이나 내 부모, 자식, 형제자매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출산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삼권입니다.

노동자의 임금 조건, 권력자가, 정치인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

결국 내 노동 조건은 내가 싸워서 정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수많은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진짜 사장, 원청 사장이 뒤에 숨어 있으면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통해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노동 3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손배 폭탄을 제기하며 노동조합을 억재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될 리가 없습니다.

헌법이 개헌되면서 노동삼권을 왜 적시를 했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노동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돼야 합니다.

노조법 2,3조가 제대로 개정될 때까지 그 선봉에 서서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도 앞장서서 피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언문과 1002인 명단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위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촉구 1000인 선언]

국회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운운 말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또 죽었습니다. SPC에서 발생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하청노동자입니다.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말합니다.

더 많은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필요에 의해 고용 형태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리는 원청 회사는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에 맞서 고용을 안정화하고,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며, 일터의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확장해나가며,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바뀌어나가기 위한 노동조합이 더욱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가 제대로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터는 노동자의 단결된 힘, 바로 노동조합이 노동권 확장을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작년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파업 중 0.3평의 철제 틀에 스스로 가두고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외치며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47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에서 인건비를 받기에 하청을 상대로 한 교섭으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원청과 직접 교섭하여 원청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약이 큽니다. 택배, 학습지, 대리운전 등 특히 고용 관계에 있어 불안정 위치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스스로 감내합니다. 하지만 과로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해 회사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이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임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 나은 내일을 그리기 매우 힘듭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노동 조건을 다 정하면서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원하청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일하다 다치고 아프고 죽는 일이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과 비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는 2009년과 2017년 한국 정부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우려하며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노조법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규제와 억압이 아닌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조법이 되도록 악법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선언하는 우리는 다시금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노조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윤을 취득하고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제한되어 있는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자가 파업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이번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예고해온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모이고 외치며 싸울 것입니다.

빵을 만들던 노동자가, 건물을 짓던 노동자가, 택배를 배달하던 노동자가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 아닌 '존엄'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일터를 위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 결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선언자 1002명 일동

Gabi Jo, JGM, sj yang, 가능, 가원(인권운동사랑방), 감자, 강경규, 강경희, 강다겸, 강병일, 강서진(민주노총 금속법률원), 강수돌(고려대), 강윤식(기독교청년의료인회), 강운지(노고지리), 강은미(정의당), 강정숙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강찬주(정의당), 강해현(공공운수노조), 강형석, 고가희, 고경심, 고미경(금속노조), 고석근(한국마사회 수도권 남부지회), 고성진, 고요,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고찬희, 공계진(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현(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광인선 노안의원(부산도시철도서비스노동조합), 구교현(라이더유니온), 구석진, 구자겸(포스코사내하청지회), 국민, 권금희(동국제강유족 상경투쟁), 권미정(김용균재단), 권상윤, 권성실,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권순부(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권승미(신씨씨앤에프), 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넷, 파riba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권영은(반올림), 권영혜(금속노조 법률원), 권오성, 권은숙, 권혁, 권혜진(교육공무직본부 고양지회), 그라시아 주엔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그린(인권교육온다), 금문(전국장애인약학협의회), 기동서(향린교회), 기민형,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기호운(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길벗(성소수자부모모임), 길승재, 김갑성, 김건균(노동당), 김건수(노동당), 김건형, 김검희(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김경림(서울 베네딕도 수녀회), 김경만, 김경선(하계심리상담연구소), 김경숙, 김경언, 김경호(부울경

건설지부), 김경희수녀(천주교인권위원회), 김계호, 김관옥, 김광석(택배노조), 김광수(세종충남지역노조), 김교학(울산민족예술인 총연
 합), 김구대(사/울산민예총) 김그루, 김근숙, 김근안, 김남근(정의당), 김남영(진보당 인권위원회), 김다정(광주청년유니온), 김덕신(달라이
 브 비정규직지부), 김도아(가톨릭노동상담소), 김도영, 김도현(노동장애학구리스), 김동성(전국금속노동조합), 김동윤(전환), 김동현(의료
 연대본부),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미영, 김명숙, 김명희(노동건강연대), 김모드, 김모순, 김미경 수녀(예수성심시녀회), 김미숙
 (김용균재단), 김미영, 김민경(플러그인) 김민아(노동교육센터 늘봄), 김민정(순천향의료원노동조합), 김민지(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김민혁(인천공항지역지부), 김민호, 김민호(반올림지원노동자모임), 김범용(전북 평등지부 조합원), 남인순(정의당), 김병태(안산단원장애
 인자립생활센터), 김병학, 김보겸, 김상필(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상현(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상희(부산여성노동포럼), 김서
 룡, 김서원, 김선생(전교조), 김선애(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김선영(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지회), 김선주, 김선철, 김선철, 김선호(공공운수노조), 김선호(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김선희 수녀(부산 성베네딕도회), 김설(청
 년유니온), 김성범(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성아, 김성호(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연 수녀, 김세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소연(비
 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진(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수현, 김수현, 김순자(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순제(서산풀뿌리시민연대), 김시
 원(정의당), 김시은(고려대), 김언철(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김연식, 김연탁(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김영구(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강서종합재가센터), 김영글,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영만(건설노조), 김영미(토닥토닥), 김영범(사회주의를 향한 전
 진), 김영수(기아자동차), 김영일,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김예니, 김요환(기독교청년의료인회), 김용대(전교조), 김원, 김유
 철(전국금속노동조합), 김윤삼(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윤희(예수성심시녀회), 김은복(민주노총인천본부), 김은정(참여연대), 김은진
 (민주노총 법률원), 김의동(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이해, 김인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인철(정의당광명시지역위원회), 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전교조 경기지부), 김재원(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재현(광주여성회), 김정곤, 김장남(공공운수노조서울
 시사서비스지원지부), 김정대(천주교예수회JPIC),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김정미(성심수녀회), 김정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정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숙, 김정열(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김정영(울산민예총), 김정이, 김정훈(울산민예총), 김정희원, 김
 제택(전교조), 김중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중현(전교조), 김중환(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김준용(여성비상사국회의), 김준형(인의협),
 김준호(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김중희(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지나(인권교육센터 들), 김지문(정의당), 김지애, 김지영(광주
 여성회), 김지혜(플랫폼C),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전교조), 김진수(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 김진태(이윤보다인간을), 김진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찬희(전국택배노동조합), 김창길(인천인권영화제),
 김창호, 김철식(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치수(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태수(전환), 김태영(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부), 김태윤,
 김태현, 김태형(민주노총 법률원), 김평수(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김한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플랫폼씨),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광주여성회), 김형기(금속노조법률원),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혜선(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동자모임), 김혜은, 김혜정(의료
 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호, 김호세아(공공운수노조), 김황경산(정의당 서울시당), 김효민,
 김효정(화섬노조), 김훈녕(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흠년(유성영동지회), 김흥덕, 김희명(영등포시민연대), 김희열(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
 부), 김희옥, 김희정(정의당 속초고성양양), 김희주(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나연, 나영(은평민들레당), 나현진, 나현필(국제민주
 연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난설현(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날고있는팽귤, 남교용(울산녹색당), 남구현, 남궁영미, 남기욱
 (성동종합재가센터), 남선영, 남소리(서산지킴이단), 남영란, 남영숙, 남정이(빵과장미), 남해운(천주교예수회JPIC), 회경(교육노동자현장
 실천), 난경(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주), 농업인, 다혜, 담은, 대학원생1(대학원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덩야평(진
 보네트워크센터), 도저창반, 도치(성소수자 부모모임), 동호준, 디그더그(민주노총금속노조), 파이루,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랄라(다산인
 권센터),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루카, 류봉하, 류한소,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후남, 리슨, 릴라, 림보(IW31), 마르티나,
 마송길 맹정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부산), 맹제영(천주교 의정부교구), 머큐리(인천인권영화제), 메릴, 메이(성소수자 부모모임), 명
 미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지현, 목수조(포스코사내하청 지회), 몽(인권운동사랑방), 문가람, 문길주, 문명숙(전교조 울산지
 부), 문서희, 문소홍(민주노총), 문영지(민주노총), 문은영(민변 노동위), 문은옥(참여연대), 문정옥, 문정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문
 현아, 문호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민아름(기독교여민회), 민애, 민영미, 민철식(반올림),
 민현기(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민희(플랫폼C), 민깡(한국여성노동자회), 바람, 박경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부), 박경환, 박근태,
 박기형(서교인문사회연구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기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박나리(노동당), 박대성(희망연대본부), 박도영
 (서대문위원회), 박두영, 박명기(정의당 전남도당), 박명자(정의당성북구위원회 당원), 박미애(전교조 인천지부), 박민지, 박복희(전교
 조), 박상수(법무법인 여는), 박상은(플랫폼C), 박상훈(예수회 JPIC), 박석운(전국민중행동), 박선희, 박성진, 박성현(4.16재단), 박세준
 (금속노조), 박세중, 박소영(한국간기연맹 울산지부), 박소희, 박수희(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박순철(생명안전 시민넷), 박슬기(언
 니들의병원놀이), 박신안(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박양수(경북대병원), 박영락(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일, 박영일(노동
 문예창작단), 박예선, 박옥주(전교조음성지회), 박완신(가톨릭기후행동), 박용주(서울교통공사노조), 박우석, 박우등(정의당), 박유리, 박
 유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 박인숙, 박일성(인의협), 박장준(공공
 운수노조 서울지부), 박재순, 박정연(국사봉중학교), 박정현, 박정훈(정의당), 박종윤, 박종현(전환), 박주영(법무법인 여는), 박준성(금속
 노조), 박준성(금속노조법률원), 박준수(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박준태(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박지혜, 박진영(울산녹색당), 박진주, 박
 진호(울산 플랜트노조), 박재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필립 수녀(예수성심시녀회), 박하순(플랫폼c), 박한희, 박혜영(권유하다), 박현숙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박현아, 박형준, 박혜영, 박혜진(광주여성회), 박효범, 박효선(민주노총), 박효진(기안초), 박홍순(기독교청년의
 료인회), 박희은(민주노총), 방두봉(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방우성(전국택배노동조합), 방철우(정의당 수원을위원회), 방현섭(기
 독교대한감리회 좋은만남교회), 방효훈(충남노동권익센터),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배경진(서교인문사회연구소), 배기남(영등포시민연
 대 피플), 배병인, 배성민(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배영미, 배지은(믿는페미), 백 방그라시아수녀(예수성심시녀회), 백경화(용인여성
 회), 백남운(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 백동규(정의당), 백수민, 백현빈, 벌새(멸종반란), 변지, 변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

근(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보라(대전여민회), 보란(전교조 여성위원회), 보리(플랫폼C), 부깽, 부순홍, 비비세시(연대하는교사잡것들), 새라(팔레스타인평화연대), 서경(교육공동체벗), 서덕석(일하는 예수회), 서동훈(공공운수노조), 서상원, 서승현(전국금속노동조합 캐리어 에어컨지회), 서은화(경기자주여성연대), 서재락(경기중서부건설노조), 서정민갑, 서정수(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준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서한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석미경, 신경희, 선종현, 선지영(다산인권센터), 선지현, 섬머스노우(성소수자부모모임), 성낙현(금속노조), 성상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세연(노동당 경기도당), 세주, 소홍철(경기중서부), 손경자(정의당), 손경화, 손광운(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손미영(행동하는 간호사회), 손미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경복지부), 손복경, 손상용(광주전남 노동안전지킴이), 손영현 수녀(성심수녀회), 손익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지은(전교조), 손진(금속노조법률원), 송기훈(영등포산업선교회), 송상연(전교조), 송서연, 송승엽, 송아름(서비스연맹법률원), 송영인, 송윤정, 송은희(참여연대), 송지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찬흠(전국건설노동조합), 송홍석(한노보연), 수산나(NCCK인권센터), 수영(청년녹색당), 수정, 승준, 시이석(반지모), 신나영, 신동찬, 신미지(참여연대), 신새미, 신석, 신석호(정의당), 신영선, 신옥주(전북대학교), 신옥희(진보당), 신우, 신우현, 신은(전교조), 신은미 수녀(예수성심시녀회), 신정임(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 신정현(반올림), 신진호(포스코사내 하청분회), 신현심(강서든든데이케어), 신현웅(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진, 신형근(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혜옥, 신효진, 신희주(가톨릭대학교), 심태민, 씨앗, 아해, 안경섭(광주전남지역농협민주노조), 안규미,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동균, 안명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안봉한(전교조인천지부), 안상호(옥바라지선교센터), 안성희,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안재우, 안지현(노동해방 마중(군)), 안진이(더불어삶), 양나래, 양대성(영등포산업선교회), 양동민(스튜디오 알), 양문영(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양병승(반계국주의학습모임반격), 양선미, 양양(건강한노동세상), 양영실, 양유진, 양은미(경기자주여성연대), 양재익(울산새생명교회), 양한웅, 이권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희자(성동재가센터), 어성범(내드름연희단),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어인광(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엄미경(전국민중행동), 엄순영, 엄정흠(금속노조), 엄진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엔진(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권팀), 여름(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여연심, 여영국(미래정치연구소), 여욱(인권재단사람), 여은, 여혜숙, 열무(교육노동자현장실천), 염정수(민주노총전북본부), 영주(녹색당), 예진(김용균재단), 오경호, 오금순, 오기형,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동영(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두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택(전국택배노동조합), 오선영, 오세훈(씨알재단), 오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오송이, 오양균(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지부), 오영진, 오은지(성소수자부모모임), 오제원, 오춘상(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오현선(기독교청년의료인회), 올리버(성소수자 부모모임), 우세옥(한국의료사협연합회), 우지연(민주노총 법률원) 원은정(전국택배노동조합), 원종만(한노보연 케이비오토택지회), 원주리(행동하는교사회), 위대현(전국교수노동조합), 유경희(22기 노동자의 빛), 유미경(정의당 충남도당),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정원 수녀(예수성심시녀회), 유종(정의당), 유준현(정의당), 유찬중, 유정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향우(반자본 대전 변혁실천단), 유형섭(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희성, 윤건(온갖데모), 윤도연, 윤성희, 윤수, 윤승훈, 윤에피파니아 수녀(예수성심시녀회), 윤영균(기아차지부), 윤영미(이마트노동조합), 윤영철(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윤은성(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윤은숙, 윤장호, 윤재철(정의당),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혜경, 윤혜영(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은두(플랫폼C), 은설(녹색당), 은성(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은채, 은희, 이가링(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가연, 이강산(반올림), 이건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이건희, 이경미(서울시사회서비스원노조), 이경아, 이경옥, 이경화, 이경희(플랫폼C), 이계정(참여연대), 이광호(평권의날갯짓), 이권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귀연, 이기태, 이기환(삼성지회 씨에스모터스분회), 이나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남수(정의당), 이단아(형명재단), 이도원,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열(항공가스총사 비정규직), 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환, 이명문, 이미숙(월담노조), 이미숙(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이미화, 이민주, 이민지, 이민천(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병국, 이병길(울산민예총), 이병인(추모연대), 이보라미(정의당), 이상규(노무법인 한빛), 이상근, 이상무(노동인권공작소), 이상수(반올림), 이상열(상열, 전국택배노조), 이상원(기독교청년의료인회), 이상운(노동건강연대), 이상진(라이더유니온), 이상훈(전국택배노동조합), 이서영(인의협), 이서용진(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 이선영, 이선웅(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선자 수녀(사랑의튼수녀회), 이선희, 이성균(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민, 이세경(전교조), 이소연(행성인), 이수목(녹색당), 이수미(전교조충북지부), 이수빈, 이수진(전교조),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슬, 이승원(시시한 연구소), 이승현(세번재권력), 이신애, 이양지(노무법인 삶), 이연지, 이영경, 이영미, 이영일, 이용석, 이용우, 이용인(세종충남희망노조), 이원재(금속노조),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미, 이윤수, 이윤수(정의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윤지, 이은경(전교조), 이은재, 이은정(전국여성연대), 이은주, 이은진, 이은진(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 이은희, 이인경((사)이주민과함께), 이인동, 이인선, 이자람, 이장규(노동당), 이재봉, 이재현(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정호(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재경, 이조은(참여연대), 이종걸(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란(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종현(서교인문사회연구소), 이주미, 이주희, 이준범(녹색당), 이준환, 이지연, 이지용, 이지원, 이지현(참여연대), 이진숙(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아, 이진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이진영수녀(사랑의씨튼수녀회), 이진우, 이진형, 이창울(쿠팡물류센터지회 대구분회), 이창훈(금속노조 부울경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이재은, 이춘목(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이춘은(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태성(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준, 이태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하나(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 지부), 이하영, 이현경(강릉노동인권센터), 이현대(금속노조), 이현석(금속노조), 이현석(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현아, 이현정 수녀(예수성심시녀회), 이현중(정의당), 이형수 수녀, 이혜민, 이혜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인(전교조), 이호기, 이호복, 이호분, 이활기(금속충남지부 케이비오토택지회), 이효민, 이효상, 이효성(정의당), 이희순(마음모아), 이희출(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인혜(인천녹색당), 임미정 수녀(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 임석영(행동하는의사회), 임수아(나비/멸종반란/멸종반란가톨릭/가톨릭기후행동/하늘땅물벗), 임영상(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울산지부),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임용환,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임은주, 임재은,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임정원(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임준형, 임춘성, 임혜경(광주여성회), 임현창, 임현희, 장남희, 장문규(민주노총 영암상담소), 장미정(전교조), 장범식(민변 노동위), 장성희 노무사, 장세레나(광주여성회), 장영순, 장예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장은실 수

녀, 장은채, 장재구 (금속노조 광전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포트엘분회), 장중수(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법인 돌곶), 장진범(플랫폼C), 장진여, 장창현(인의협), 장향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장희연 (행동하는 간호사회), 재임, 재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경민, 전관수, 전국(정의당 전국위원), 전나민, 전남병(교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전명주(울곡교회), 전병무(삼성지회), 전영아, 전원(교육공무직노조), 전은경(참여연대), 전주현(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전지윤(다른세상을향한연대), 정경숙(전국 교육공무직 본부), 정경희(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정광호(반올림),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 정대섭(점군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정동현(쿠팡물류센터지회),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정명옥, 정무빈(플랫폼C), 정미경(공공운수노조법률원), 정미경(울산민예총), 정미경(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병철(정의당), 정병형(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서영(변혁적여성평과장미), 정성애(멸종반란가톨릭), 정성용(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성철, 정성훈(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세경(금속노조), 정순영, 정슬기, 정승남(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정승화, 정여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연용(노동당), 정연훈, 정영, 정영미, 정용재(공공운수노조), 정우준(노동건강연대), 정운교(공공운수 서울지역본부), 정윤심, 정윤영, 정윤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정은경(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은정(민주노총법률원), 정인열(작은책), 정재택(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정정은(문화연대), 정종훈, 정지승(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정지원(정의당), 정현일, 정혜원(금속노조), 정효자(전교조), 정희섭(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디,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귀제(정의당) 조금숙 수녀, 조명심, 조명자, 조선형 수녀(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조성식(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조승규, 조승현(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애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연민(민주노총 법률원), 조영훈(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노모), 조용빈, 조윤희(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은수, 조은아(울산민예총), 조은혜(기후정의동맹), 조주용(기독교대한감리회 약속교회), 조진희(전교조 서울지부), 조찬진(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창익, 조한진희(다른몸들), 조현지, 조현철(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조혜연(김용균재단),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희주(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주남식(울산 동구주민회), 주인숙(중앙보훈병원 전문의 노동조합), 주정원(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지니(인친인권영화제), 지아가(울곡교회),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혜복(전교조), 진경호(전국택배노동조합), 진냥(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진영준(비정규직없는서울대만들기공동행동), 진재연(플랫폼씨), 차강, 차성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채민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채비비안나 수녀(예수성심시녀회), 채푸름, 채훈병(은평민들레당), 천성호(노들장애인야학), 천연옥(전국민주일반노조), 청운수, 최국진(진보당 목포시당),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최덕현(교육노동자현장실천), 최명섭, 최명우(삼성전자서비스울산지회), 최명주(울산녹색당), 최문경(칠무글방), 최미아(교육공무직 노조), 최미정,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병현(진보 3.0), 최상덕(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최서운, 최선행, 최성봉(정의당), 최세윤(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노동권/성인권특별위원회 미래의외침), 최수근(민주노총 대학노조), 최아네스수녀, 최영동(민주노총), 최영립(천주교 수원정평위마음모아), 최예니(성공회대학교 노학연대 '가시'), 최유경, 최윤슬, 최윤정, 최은경(전교조), 최은영(서울대병원 노조), 최인호, 최인희, 최재성(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최재훈, 최정화(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정화(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최정훈(한마음지부), 최중두(정의당), 최준영(문화연대), 최진일(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최한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한술(정의당), 최형목(천안살림교회), 추용운(삼성전자서비스지회), 치명타(인천인권영화제), 카슈, 탁성일(전국플랜트 노조 강원지부), 태양빛,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프리지아, 하루사랑, 하명성, 하성안(이윤보다인간을), 하애남, 하조, 하태용(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기박(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양(울산새생명교회), 한미경(전국여성연대), 한미경(한미경,전국여성연대), 한밀(인권운동사랑방), 한상진, 한선남, 한선범(전국택배노동조합), 한성욱(전국철도노동조합), 한송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장보(민주노동총건설산업연맹 충남건설기계지부), 한정에(정의당), 한지, 한창운(서울교통공사노조), 한 채민,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혜선(노들장애인야학), 한희철(정의당), 함은옥(기독교청년회연회), 핫플([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해금 정연훈(수원여성회), 해미(인권운동사랑방),허윤제(치유외연대의공동체 두리공감), 현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권위원회), 현일구, 혜수, 홍관희,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홍명교(플랫폼c), 홍사훈(정의당), 홍성민, 홍성주, 홍순향, 홍익표, 홍정익, 홍종표(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홍지연(전교조구일고분회), 홍진희(경기 청년유니온), 홍태화, 홍향임(기독교연회), 홍희자(사회주의를향한전진), 황상운(기아차비정규직), 황선애(성소수자부모모임), 황선영,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유나, 황은진(전인한의원), 황인근, 황인섭(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황정민(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황준의(예수살기), 황지수(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 황진호(녹색당),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황푸하(새민족교회), 황한술, 훈창,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